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5316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하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백나눔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에게 2019. 1. 11. 100,000,000원, 2019. 2. 21. 10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3.43%, 변제기 2020. 1. 11.로 하고, 2019. 3. 15. 50,000,000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원고가 일주일 전에만 이행최고를 하면 곧바로 변제해 주기로 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C은 2019. 4. 26. 자신의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망 C의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9.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29. 접수 제59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0억 상당이고, 망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망 C은 2020. 9.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망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룬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망 C은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망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던 망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계약체결의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4. 2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7,48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21. 접수 제682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금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의 시가가 10억 상당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인 250,000,00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망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199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가 93,810,019원인 반면, 피고의 같은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 합계는 1,243,961,254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240,000,000원을 피고가 상환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 편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상당부분은 이전에 망 C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이하 ‘남양주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대금인데, 1999년경 남양주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망 C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망 C의 지분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주시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및 비용 등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망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의 실질을 가진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피고와 망 C은 법률상 부부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C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망 C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선익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수익자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음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지붕 22층

지하2층 534.00㎡

지하1층 534.00㎡

1층 557.16㎡

2층 623.94㎡

3층 623.94㎡

4층 623.94㎡

5층 623.94㎡

6층 623.94㎡

7층 623.94㎡

8층 623.94㎡

9층 623.94㎡

10층 623.94㎡

11층 623.94㎡

12층 623.94㎡

13층 623.94㎡

14층 623.94㎡

15층 623.94㎡

16층 623.94㎡

17층 623.94㎡

18층 332.88㎡

19층 332.88㎡

20층 332.88㎡

21층 262.50㎡

22층 262.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1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1178.4㎡

2. 동 소

대 26848.4㎡

3. 동 소

대 178㎡

4. 동 소

대 526.4㎡

5. 동 소

대 526.1㎡

6. 동 소

대 526.3㎡

7. 동 소

대 185.6㎡

8. 동 소

대 1820.7㎡

9. 동 소

대 1832.9㎡

10. 동 소

대 5196.8㎡		
11. 동	소	
대 441.1㎡		
12. 동	소	
대 11.6㎡		
대지권의종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5, 6, 7, 8, 9, 10, 11, 12. 39272.3분의 27.3334		

